충북웰빙노인전문요양원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제26조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1. 본 시설의 입소계약은 이용자 및 시설의 상호 일반적 규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노인장기요양보험 등 등급판정자(1등급,2등급,3등급,4등급/시설(재가)급여 대상자)를 대상으로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에 따라 계약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 재등급에 따라 재계약을 하고 계약해지는 7일 전 계약해지를 본 시설에 방문 및 유.무선통보를 원칙으로 한다. 단 아래의 특수한 사유와 제 11조의 내용에 의하여 본 시설이 입소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경우는 최소 2주전 계약해지내용을 통보하고 본 시설은 퇴소조치를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한다.
   가) 시설이 폐쇄, 이사로 인한 운영의 일시적 중단인 경우
   나) 운영시설이 법규위반으로 폐쇄조치 및 영업정지인 경우
   다) 직원에게 중대한 해를 가한 경우
3.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은 제 29조의 이용부담비 표와 같이 하되,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수가 기준이 변경되면 그 금액이 자동으로 변경하여 적용하기로 한다.
4. 별도 비용으로 규정된 입소보증금은 없다.
5. 기타 운영규정 제 9조에서 정하지 못한 세부계약내용은 이용계약서 사항을 따른다.

제27조 (계약당사자의 의무와 권리)

서비스 제공자와 이용자(입소어르신)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시설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1. 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가) 안전한 시설 생활여건을 조성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함(단,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 간호나 간병을 제공하지 아니한다.)
   나) 신변에 이상이 있으면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하여야 함. (단, 2회 이상 연락하였으나 연락이 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2. 이용자의 의무
   가) 월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함
   나) 시설의 건전한 생활분위기를 조성하여야 함.
   다) 시설에서 개인이 애완동물을 사육하거나 동행할 수 없음
   라) 보호자 인적사항이 변동되면 즉시 통보하여야 함.
   마) 그 밖에 시설 규정 및 안전규칙을 이행하여야 함

3. 보호자(신원인수인)의 의무

가) 입소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함

나) 입소자의 원 이용료 등 입소비용을 부담하여야 함.

다) 인적사항 등이 변경되면 즉시 통보하여야 함

라)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우면 대리인을 선정하여야 함.

마) 입소자가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 간호나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을 보호자가 부담하여야 함.

4. 보호자(신원인수인)의 권리

가)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입소자가 제공 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나)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입소자의 퇴소·전원을 할 수 있는 권리

다) 표준약관에 따른 입소자 면회 및 외박·외출에 관한 권리

라) 입소자의 생활 시설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마) 입소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바) 입소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사) 입소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아) 보호자회의에 참석하여 시설운영 및 급여제공 과정에서의 특이사항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건의사항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자) 입소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신원인수인의 알 권리

차)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 퇴소(전원)시 연계기록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카) 시설의 협약·연계 병원 외 특별한 경우 입소자에 대한 지정병원 이용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제 28조(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 또는 보호자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입소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때
2. 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 2회 이상 이용료 납부를 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4. 시설에서 시설규칙이나 시설 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시설 운영 또는 다른 입소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5.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다른 입소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6. 10일~15일 이상 입원을 하였을 경우, 다만 입소자나 보조자의 요청으로 퇴소를 유보하는 경우에는 10일 초과 유보일수에 대한(보험료 포함) 수납액 전액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퇴소를 유보할 수 있다.
7.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들어났을 때

제 29조(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1. 다음 각 호는 이용비용이 별도의 운영위원회의 조정절차가 없이 변경 가능하다.
   가)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 및 갱신되었을 경우
   나)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요양급여 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2. 이용료 중 비급여비용의 조정할 경우 운영위원회 동의절차와 보호자대표와의 협의절차를 통하여 비급여비용의 이용료를 변경 조정할 수 있다.
3. 비급여비용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1일 식대비용은 ₩7,500원(1식 ₩2,500)
   나) 이.미용비용은 봉사 및 무료 또는 수급자가 요구시에는 실비로 한다.

2025년도 이용료 및 비용부담액

구 분		본 인 부 담 금(30일기준)			
		일 반 (20%)		경 감 (12%)	경 감 (8%)
		현행	'25.1.1부터	'25.1.1부터	'25.1.1부터
본인 부담금	1등급(90,450원)	505,440	**542,700**	**325,620**	**217,080**
	2등급(83,910원)	468,900	**503,460**	**302,070**	**201,380**
	3~4등급(79,240원)	442,800	**475,440**	**285,260**	**190,170**
비 급 여	식재료비	225,000 1일:1식2,500*3회=7,500			
합 계	1등급	730,440	**767,700**	**550,620**	**442,080**
	2등급	693,900	**728,460**	**527,070**	**426,380**
	3~4등급	667,800	**700,440**	**510,260**	**415,170**

제 30조(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1. 서비스 내용은 다음 표에 의거 적용한다. 단 시설사정에 의해 내용이 변경될 수 있다.

사업명	사업내용
신체적·심리적·사회적 증진사업	노인들의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장애를 치료 레크리에이션, 회상치료, 원예치료, 음악치료, 인지활동, 미술활동 공예활동 등을 통하여 해소하고 정신적 안정을 통한 건강한 노후를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
급식 및 간식 서비스	노인들에게 식사와 간식을 제공함으로써 건강유지를 도모하고 삶의 질 향상
위생서비스	이·미용, 목욕 등의 위생서비스를 통해 청결한 위생상태를 유지하도록 하여 각종 질병예방
여가생활지원사업	사회적으로 소외되기 쉬운 노인들에게 생신잔치, 야외나들이, 명절 잔치 등을 토하여 심신의 안정과 정신건강 회복을 도모하여 삶의 질 향상
후원사업	후원자 개발을 통한 후원금 모집으로 서비스의 다양화 및 내실을 기하고 사업에 대한 지역주민의 인식 제고
자원봉사활동사업	자원봉사자의 활용으로 노인과 지역주민간의 유대를 형성함은 물론 세대간의 괴리감 완화
조사 및 기타사업	욕구조사와 운영간담회를 통하여 이용 노인들에 대한 정확한 욕구를 파악,수렴하여 새로운 프로그램 개발 및 서비스의 질적 향상 도모
홍보사업	시설사업의 나용 및 이용방법 등을 각 종 언론매체나 방송을 통하여 널리 홍보함으로써 많은 노인들의 이용확대와 아울러 지역주민들의 장기요양보호사업에 대한 관심과 자원봉사활동 참여 유도
상담서비스	전화, 내방 및 방문을 통하여 노인생활 및 건강, 장기요양서비스 이용방법 등 다양한 노인복지 정보 제공
의료서비스	노인들이 겪고 있는 각종 만성퇴행성 질환이란 기타 성인병에 대한 기초간호서비스, 무료 진료, 침술, 정기건강검진, 예방접종 등을 제공하여 건강한 노후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원조
기능회복 및 훈련사업	만성퇴행성 질환으로 약해진 노인들의 신체를 물리치료, 운동치료, ADL 훈련, 작업치료를 통하여 재활을 유도하고 잔존기능을 유지·향상